#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

(대표발의: 김진천 의원)

의 안 번 호 20-118

발의년월일: 2020. 8. .

발 의 자:김진천,강명숙,권영숙

김종선,서종수,이민석

정혜경,조영덕,최은하

### 1. 제안이유

마포구민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, 감염병 예방을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료 예방접종 지원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을 규정(안 제1조)
- 나. 무료 예방접종대상을 규정(안 제2조)
- 다. 무료 예방접종의 실시 등을 규정(안 제3조)
- 라. 위탁계약 체결 및 위탁계약 해지 등을 규정(안 제4조~안 제5조)
- 마. 무료 예방접종 신청 및 지원절차를 규정(안 제6조)
- 바. 무료 예방접종 비용 및 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 등을 규정 (안 제7조~안 제8조)

- 사. 비용상환 이의신청을 규정(안 제9조)
- 아.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을 규정(안 제10조)
- **3. 관계법령:**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4조~제26조
- 4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첨부
- 5. 입법예고: 2020. 8. 28.~2020. 9. 1.
- 6. 조례안 : 붙임

###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 방지를 위해 알맞은 시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예방접종대상)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 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(이하 "무료 예방접종"이라 한다)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단,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는 제외한다.
  - 1. 접종일 현재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"구"라 한다)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 여 수급권자
    - 나.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    - 다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

- 라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마.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2. 접종일 현재 마포구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- 가. 「의료법」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의료인, 의료기사, 기타 보 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자
  - 나.「영유아보육법」에 의한 보육시설 교사 및 종사자
  - 다. 환경미화원(직영, 대행 외부작업자 및 차량 운전자를 포함한다)
  - 라. 의무관리대상(150세대 이상) 공동주택 경비원(외부 근무자)
- 마. 시내버스, 마을버스, 택시회사, 개인택시 운전사 등 대중교통 운전사
- 바. 「장애인복지법」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 시설 생활자 및 종사자(환자활동 도우미 등 환자 직접 접촉 근무자)
- 사. 「모자보건법」제15조, 제15조18에 의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
- 아.「아동복지법」제44조2에 따른 돌봄센터 종사자, 제52조제1항,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
- 자.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제3조(예방접종의 실시 등) ① 무료 예방접종은 매년 1회에 한하여 실

시한다.

- ② 무료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실시하되 「의료법」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- 제4조(위탁계약 체결) ①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  - 1. 예방접종업무의 위탁범위에 관한 사항
  - 2. 위탁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
  - 3. 위탁계약 조건에 관한 사항
  - 4.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
  -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의료기관(이하 "위 탁의료기관"이라 한다)은 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 여야 한다.
- 제5조(위탁계약 해지)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단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.
 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
  - 2. 위탁의료기관이 위탁계약서상 위탁계약 조건을 어겼을 때
  - 3. 그 밖에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
- 제6조(신청 및 지원절차) ① 무료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한다.

- ② 위탁의료기관은 제1항의 신청인이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,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 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.
- **제7조(예방접종 비용)**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는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과 같게 정한다.
- **제8조(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)** 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구청장에게 비용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.
  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상환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비용 상환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.
  - ③ 예방접종비용의 상환 신청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「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다.
- 제9조(비용상환 이의신청) 위탁의료기관은 비용상환 불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.
- 제10조(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)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7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.
- 제11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」을 준용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제2조제2호의 규정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제3조(적용례) 이 조례 시행 전 무료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제3조 제1항에 따른 무료 예방접종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## 【관계법령】

### 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제24조(필수예방접종)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(이하 "필수예방접종"이라 한다)을 실시하여야 한다.

- 1. 디프테리아
- 2. 폴리오
- 3. 백일해
- 4. 홍역
- 5. 파상풍
- 6. 결핵
- 7. B형간염
- 8. 유행성이하선염
- 9. 풍진
- 10. 수두
- 11. 일본뇌염
- 12.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
- 13. 폐렴구균
- 14. 인플루엔자
- 15. A형간염

- 16.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
- 17.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
-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예 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.
- 제25조(임시예방접종)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(이하 "임시예방접종"이라 한다)을 하여야 한다.
  - 1.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 군수·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
  - 2.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 -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.
- 제26조(예방접종의 공고)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임시예방접종을 할 경우에는 예방접종의 일시 및 장소, 예방접종의 종

류, 예방접종을 받을 사람의 범위를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제32조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.

###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비용발생 요인 : 제2조(무료지원대상), 제3조(무료 예방접종의 실시 등) 나. 수입발생 요인 : 없음

#### 2. 비용추계의 전제

- 비용추계기간 : 2020. 9. ~ 2024. 12.(52개월)

#### 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MT.							
연도 구분		2020	2021	2022	2023	2024	합계
세	국시비	2,222,464	1,528,646	1,605,076	1,685,329	1,769,609	8,811,124
입	소계(a)	2,222,464	1,528,646	1,605,076	1,685,329	1,769,609	8,811,124
	생후6개월~	384,611	403,841	424,033	445,234	467,495	2,125,214
	59개월 (30:35:35)	(구비 115,575)	(구비117,113)	(구비 122,969)	(구비129,117)	(구비 135,557)	(구비 620,331)
	유치원 및 초등학생	434,854	456,596	479,425	503,396	528,565	2,402,836
	(30:35:35)	(구비 126,558)	(구비 132,412)	(구비 139,033)	(구비145,984)	(구비 153,283)	(구비 697,270)
	중1	46,806	49,146	51,603	54,183	56,892	258,630
	(30:35:35)	(구비 13,620)	(구비 14,252)	(구비 14,964)	(구비15,713)	(구비 16,498)	(구비 75,047)
	중2-고3	337,134	0	0	0	0	337,134
세출	(30:35:35)	(구비 97,769)	U	U	U	U	(구비 97,769)
	62세-64세	288,198	0	0	0	0	<b>288, 198</b>
	(30:35:35)	(구비 84,398)	0	0	J	J	(구비 84,398)
	65세이상	1,163,012	1,221,162	1,282,220	1,346,331	1,413,647	6,426,372
	(30:35:35)	(구비 339,434)	(구비 354,136)	(구비 371,843)	(구박 390,435)	(구비 409,957)	(구비 1,865,805)
	임신부	21,212	22,272	23,385	24,554	25,781	117,204
	(30:35:35)	(구비 6,185)	(구비 6,458)	(구비 6,781)	(구비7,120)	(구비 7,476)	(구비 34,020)
	취약계 <del>층</del>	61,600	64,680	67,914	71,309	74,874	340,377
	(구비 100)	(구비 61,600)	(구비 64,680)	(구비 67,914	(구비 71,309)	(구비 74,874)	(구비 340,377)
	<b>서울형</b> (시 65:시특교 35)	330,176	0	0	0	0	330,176
	사기()	3,067,603	2,217,697	2,328,580	2,445,007	2,567,254	12,626,141
	소계(b)	(구비 841,139)	(구비 689,051)	(구박 723,504)	(구박 759,678)	(구박 797,645)	(구비 3,815,017)
□총비용(b-a)		△845,139	△689,051	△723,504	△759,678	△ <b>7</b> 97,645	△3,815,017

### 4. 재원조달 방안

- 국 26% ·시비(특별교부금 포함) 47 % ·구비 27%

(국:시:구 30:35:35 건당 1,750원 시비지원)

5. 덧붙이는 의견 : 구체적인 세입 및 세출은 차후 변경될 수 있음

6. 작성자 : 보건소 건강증진과 최수지 (☎ 3153-9074)